

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

의안
번호

4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(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)내 「오창벤처프라자」건립계획을 2001년도 제1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후 입주 및 지원시설의 확충사유가 발생하였고
- 지역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기술개발 연구·지원 기능을 담당할 「오창연구타운」 조성부지 및 「지역산업진흥센터」를 건립하기 위한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 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도유재산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재산의 취득

< 오창 벤처프라자 건립계획 변경 >

- 위 치 : 청원군 오창면 가리 641-1 (오창벤처임대공단 내)
- 규 모 : 연건평 7,124㎡(2,155평, 지하 1층, 지상 6층)
- 사업기간 : 2001. 7~2003. 12(30개월)
- 사 업 비 : 6,700,000천원(특별교부세 29억, 도비 31억 국비 7억)
 - 규 모 : (당초) 4,960㎡[1,500평] (변경)7,124㎡[2,155평]
 - 사업비(도비) : (당초) 21억원 (변경) 31억원
- ※ 예산확보계획 : 2001년(6억원), 2002년(10억원), 2003년(15억원)

< 오창연구타운 부지 취득 >

- 위 치 :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685-1번지
- 규 모 : 287,085㎡(86,843평)
- 조성계획 : 지역산업진흥센터 등 5개 분야
 - ① 지역산업진흥센터 (9,000평) ② 테크노 파크(30,000평)
 - ③ 나노Fab (10,000평)
 - ④ 국책연구기관 유치(생명공학연구원분원, 환경정체 평가연구원 등 : 20,000평)
 - ⑤ 기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, 신소재 신약개발 연구소 등(17,843평)
- 사업기간 : 2002. 7 ~ 2006. 12
- 사 업 비 : 13,026,450천원(전액도비, 2,605,290천원 × 5년)

< 지역산업진흥센터 건립 >

- 위 치 :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685-1번지(오창연구타운 내)
- 규 모 : 부지 29,752㎡(9,000평) 연건평10,248㎡(3,100평)
 - 반도체센터 : 연건평 1,600평(지하1, 지상 4)
 - 전자정보 센터 : 연건평 1,500평(지하1, 지상4)
- 사업기간 : 2002. 6 ~ 2003. 12
- 사 업 비 : 8,200,000천원(국비 5,800,000 도비 2,400,000)

3. 예산상황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재신취득	재산저분	교원취득	교환저분	비 고
계	27,926,450 (도비:18,526,450)				
오창벤처프라자 건립	6,700,000 (도비:3,100,000)				
오창연구타운 부지 취득	13,026,450 (도비:13,026,450)				
지역산업진흥센터 건립	8,200,000 (도비:2,400,000)				

4.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: 별첨

5. 관계법령 : 별첨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제78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

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

200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【회계명 : 일반회계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당 주			변 경			합 계				
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	
취 입 특 기 타	계	토지	2	329,599㎡	50,040,000	1	287,085㎡	13,026,450	3	616,684㎡	63,066,450
		건물	1	2,800평	6,300,000	2	5,255평	5,500,000	3	8,055평	11,800,000
		기타									
	매 입	토지	2	329,599㎡	50,040,000	1	287,085㎡	13,026,450	3	616,684㎡	63,066,450
		건물	1	2,800평	6,300,000	2	5,255평	5,500,000	3	8,055평	11,800,000
		기타									
	회 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기 타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처 분	계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매 각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회 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 타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
* 금액은 송사업비에 대한 도비 예산임

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 천원)

일련번호	재 산 표 시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,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				
	토지	1 건	287,085㎡ (86,843평)	13,026,450 (13,026,450)			
	건물	2 건	17,372㎡ (5,255평)	14,900,000 (5,500,000)			
	기타						
1	토지 (1건)	청원군 오창면 망청리 685-1 (오창과학산업단지내)	287,085㎡ (86,843평)	13,026,450 (13,026,450)	2002. 7 -2006. 12	오창 연구 단지 부지 취득	한국토지공사
	건물 (2건)	청원군 오창면 각리641-1 (오창벤처임대공단 내)	7,124㎡ (2,155평)	6,700,000 (3,100,000)	2001. 7 -2003. 12	오창벤처 프라자 건립	신 속
		청원군 오창면 망청리 685-1 (오창연구단지내)	10,248㎡ (3,100평)	8,200,000 (2,400,000)	2002. 6 -2003. 12	지역산업 진흥센터 건립	신 속
	기타						
2	토지						
	건물						
	기타						
3	토지						
	건물						
	기타						

1. 추정가액 ()는 노비 예산액

관 계 법 령 발 취

【지방세정법 및 동법시행령】

지 방 세 정 법	지 방 세 정 법 시 행 령
<p>제77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78조(공유재산심의회)①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</p> <p>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법 제7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 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. 2.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

【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】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기전까지 의회 의견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 2 ~ 5호 생략